

## ●소방청공고제2020-9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소방청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점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mailto: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521, 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공고제2020-228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변상금 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문화재청장

1. 제목: 2019년도분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비고
장문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2019.1.1.~12.31 (1년)	36㎡	269,560원	
장문현	서울 성북구 석관동 409	2019.1.1.~12.31 (1년)	497㎡	12,166,560원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4. 공고기간: 2020.7.15.~7.29.(15일)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대행자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